

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
專門委員 檢討報告書

1. 발의자 : 김환동의원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06년 8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심의회 참석수당을 「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, 기타 조례제명 띄어쓰기, 인용법령 낫표붙이기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.

4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인용조문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변경
(안 제1조)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(2006.2.8)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변경되었음.

나.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(안 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의3 개정에 따른 조치
- 다.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「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(안 제15조)
- 심의회에 출석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음.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, 심의회 참석수당을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, 기타 조례제명 띄어쓰기, 인용법령 낫표붙이기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, 안 제5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,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(「」) 사용에 따른 것이며
-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지방의회위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이며

- 안 제15조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등을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.